

국내휴대품도 검역실시

□ 美國의 식물검역 현황 □

농수산부 과수과 농림기좌 유 기 열

미농무성 초청으로 '84. 8. 10~9. 29까지 미 농무성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공무원 교육원(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 Maryland주의 Fredrick시 소재)에서 식물검역 연수과정에 참석한 연수자는 한국, 코스타리카, 자마이카, 소말리아, 예멘, 우루과이, 마다가스카르, 잠비아등 8개국에서 온 9명이었다. 연수는 이론과 현장실습이 각 50%씩 되어 있었으며 특히 공항과 항구검역 및 검역제도 수립등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의 식물검역은 우리나라의 식물검역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몇가지 상이한 것이 있어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의 식물검역에 대하여 약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업무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활동>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소개
○우리나라 사과, 배, 단감의 대미 수출방안 협의(공식답변을 서한으로 접수)

○장비구입처 파악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곡류 및 목재에 대한 철저한 검역 요청
○'84 LA. 올림픽을 대비한 미정부의 조치중 국제입국관계 소위원회회의의록 입수<1차회의록(1982. 6. 30)

◇ 美國의 식물검역 현황 ◇

부터 최종회의인 제22차 회의록까지 (1984. 6. 8)

○수출식물 위생증 문제 협의

○주한미군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 실시 문제 협의

<기구 및 인원>

식물검역(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800명이며 이중 식물검역관(GS-9 이상)은 약 900명이다.

PPQ는 미농무성 시장 및 검사처

(Marketing and Inspection Services)의 동식물검역국(APHIS)의 3개 부국(副局)중 1부국(副局)으로 되어 있으며 1984. 7. 30일에 기구표가 개정되었다.

<법규>

미국의 식물검역 법규는 법(Act) 규칙(Notice, Regulation ;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로 분류됨), 요령(Manual)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법	규 칙	요 령
Plant quarantine act	CFR319 국제 검역	규칙과 분류가 같으나 분류코드가M으로 시작됨.
Mexican border act	319. 8 목 화	
organic act	319. 15 사탕수수	
Federal Plant pest act	319. 19 감귤묘목	
Terminal inspection act	319. 24 옥수수병	
	319. 28 감귤과실	
Honeybee act	319. 34 죽재류	
Joint resolution Incipient or emergency control of plant pest act	319. 37 종묘류 및 식물성 산물	
	319. 41 옥수수 해충	
	319. 55 벼	
Golden nematode act	319. 56 과실 및 채소류	
overtime act	319. 59 밀	
Halogeton glomeratus act	319. 69 포장재료	
	319. 73 코 피	
Cooperation with state agencies act	319. 74 절 화	
Federal noxious weed act	320 멕시코 국경 규칙 321 Restricted entry orders(Irish potato)	

- | | |
|-----|-------------|
| 322 | 꿀벌에 관한 규칙 |
| 330 | 연방 식물병해충 규칙 |
| 351 | 우편수입 식물검역 |
| 352 | 식물검역 안전규칙 |
| 353 | 수출식물위생증명규칙 |

※ 국내검역규칙은 제외시켰음.

<검역제도 수립시 고려할 요인>

식물검역 제도를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에 고려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법 규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 법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의 양호 여부.

2. 행정능력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며 필요시 확보가능 여부

3. 의사전달능력

통신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명확하고 적절한 요령(Manual)과 지침이 있으며 상하간의 협력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4. 검사능력과 권한

검역관이 선박, 항공기, 여행자의 짐, 화물등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 및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5. 병해충 분류 동정 능력

병해충 분류동정 전문가와 필요한 기자재의 확보 여부

6. 병해충의 위험(Risk)정도 평가 능력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 결정을 하

며, 평가 위원회의 구성 여부

7. 처리능력

소독등 처리에 필요한 장비, 시설, 농약, 처리기준, 위해예방책, 전문가가 있는지의 여부

8. 연수능력

검역직원에 대한 정규 연수과정의 있으며 연수센터와 강사의 확보 여부

9. 수입허가증 발행

수입식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10. 수출위생증명서의 발행

상대국의 수입요구조건을 알고 있으며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권한과 위생증 발행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11. 새로운 병해충 조사 능력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 및 분포에 대한 조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12. 병해충 분포조사 능력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분포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13. 국내검역능력

국내검역을 위한 법규, 시설, 장

◇ 美國의 식물검역 현황 ◇

비,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14. 병해충의 방제 또는 근절능력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법규, 장비, 인력,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15. 유관기관과 국가간의 협력

유관기관과 국가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16. 검사 및 소독방법 개발능력

새로운 검사 및 소독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17. 검역소(입항지 주재실)

입항지에 재식용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18. 격리재배검역제도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은 식물을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연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시설, 전문인력등이 있는지의 여부

<동물부산물검역>

항구나 공항에 동물검역관이 상주하지 않고 식물검역관이 동물부산물(Animal byproducts)을 검역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크게 달랐음.

<근무시간이외 근무수당>

근무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도 일선 검역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부조리 척결의 차원에서 공휴일과 근무시간외 근무시에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군기지의 식물검역>

호놀룰루의 Hickham Airbase를 시찰한바 공군기지내에도 일반 국제공항과 동일한 시설설치와 검역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검역관 1명이 상주하고 검역물량이 많을 때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부터 검역관을 지원받고 있었다.

국제간 이동은 물론 하와이와 미국 본토간에 이동하는 항공기, 항공 화물,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추진중인 주한 미군용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실시방안에 미흡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연수>

신규 검역공무원에 대하여는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에서 2개월간 교육을 시킨후 현지에 근무발령을 내며 일반 식물검역공무원에 대하여는 각주에서 매년 1주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곡류검역>

우리나라와는 달리 수출 곡류는 미연방 곡류검사소(Federal Grain Zusppection Service)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의거 식물검역관

이 수출식품 위생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었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과실 및 채소류의 목록>

M319.56-24 section II에 의하면
그 지역, 조건 및 물품은 아래와 같
음.

<검역대상물품>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Mani-
fest)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자료에 의거 검역대상 여부를 결정
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입력작업은
세관에서 실시하고 검역소에는 단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지 역	조 건	물 품
미국 전지역	아무 제한 없음	Cannonball 과실, 코코넛, Cyperus Corn, 백합구근, Maguey, 생양송이, 땅콩, St. Johnsbread, Tamarind bean pod, Truffle, Waterchestnut, Wafernut, 상기물품외에 건조 두류, 건조종자, 건조죽순, 건조 herbs 및 유사물품은 수입허가없이 식용으로 검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음.
미국 전지역	선적전 수입허가를 받아야함	밤(319.56-26b의 처리요함) ²⁾ 건조마늘, 생강, 얌(319.56-2m의 처리요함) ²⁾
팜도	선적전 수입허가를 받아야함	알리움, Artichoke, 바나나, 줄콩, bell pepper, 당근 셀러리, 배추, Brassica olerace, 감꽃, 가지, Cu-Curbit, 포도, 오크라, 시금치(Lettuce), 파슬리, 감, pea, 석류, 감자, 무우, Rhubarb, 핵과실, 고구마, 토마토, 순무, Turnip greens, Dasheen(no tops)
하와이	선적전에 수입허가 를 받아야함	
미전지역	입항지까지 20°F 이 하에서 냉동 저장되 어야함	과실 및 채소류

◇ 美國의 식물검역 현황 ◇

1) 처리기준

장 소	온도(°F)	MB약량	처리시간	기 압	
훈 증 상		1b/1,000cu.ft			
	90-96	4	3	대 기 압	
	80-89	4	4		
	70-79	5	4		
	60-69	5	5		
	50-59	6	5		
	40-49	6	6		
		80-96	3	2	26 진 공
		70-79	4	2	
		60-69	4	3	
	50-59	4	4		
	40-49	4	5		
천 락	96-96	4	3	대 기 압	
	80-89	4	4		
	70-79	5	4		
	60-69	5	5		
	50-59	6	5		
	40-49	6	6		

2) 처리기준

장 소	온도(°F)	MB약량	처리시간	기 압
훈 증 상		1b/1,000cu.ft		
	90-96	2.5	4	대 기 압
	80-89	3.0	4	
70-79	3.5	4		

